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4.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15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4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정보공개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함

4. 주요골자

- 제명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로 함
- 제증명 외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정보공개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별표2와 같이 함 (안 제3조 제1항)
-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(안 제4조 제2항)
 -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·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의 학술이나 연구목적
 -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
 - 기타 기관장의 공공복리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